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전화번호)	전결규정	포함
처리기간	시	강	결재	전결사항
시행일자	<div style="font-size: 2em; font-weight: bold; text-align: left;">11.20</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0%;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결재 11.20 제부시장 </div>			
보존년월				
보조기관	제부시장	전결	별무담당관	범무담당관
보조기관	보사국감		(여규안심사)	
보조기관	사피과감			
기안책임자	노경상	76.7.11	조	
경유	관안참조	발신	시강	통제
수신				
참조				
제목	직업안정업무 처리요강 개정			
	(27안)			
수신	내부결재			
제목	등 권			
1. 76.3.19 부터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 여규 제32호 직업안정업무 처리요강중 다음 미비사항을 별첨과같이 개정하고자합니다.				
가. 구조론의 배열이 비논리적이며				경서
나. 시강, 구청장의 업무한계가 명백하지 않으며				
다. 행정적분의 절차 명시 및 청분장 행정 재현의 여지가 없으며				관인
라. 직업안정관계 법령과 상호보완이 있으며				
마. 경기 분기보고 (기경)가 월보로 되어 있음.				
첨부	1) 직업안정업무 처리요강 개정 (안) 1부.			
	2) " " 대략도 1부.			
	3) 개정 이유 1부. 끝.			
(첨:안)				

수신 수신처 상호

제목 동 권

1. 76.3.19부탁 시행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예규 제322호 직업안전업무

적리요강을 별첨과같이 기재 시행하니 업무에 참고를 기압것.

첨부 서울특별시 직업안전 적리요강 개정 (서울특별시 예규 제 호) 1부. 끝

수신처: 석구 1- 13, 서울 1- 2, 시립제1,2,3근로자회관, 부녀사업관.

(2환안) 69

수신 문파공보실장

발신 보건사회국장

제목 시보 게재의뢰

1. 76.3.19부탁 시행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예규 제322호 직업안전업무

적리요강이 별첨과같이 기재되었기 등보하시니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서울특별시 직업안전 업무 적리요강 개정 1부. 끝.



0. 시각의 권한 위임 여부를 명백히 하고 (제3조)

~~0. 동행 직원 동행의 동행 제정하여 하리질 등 (제45조)~~

0. 법 제26조 위반 사항 행정처분 (제15조 4항 바)

0. 동행 직원칙 제19조 예 관한 장부등을 1년간 보관 (제9조, 제15조 4항 바)

0. 정기분기 보고 (지정)가 월보로 되어 있음 (제17조)

0. 동행 1,2등 직업안내소의 업무 처리를 구분하여 명확히 함.

(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서울특별시직업안정업무처리요강중 ^{개정요강} ~~규정~~

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8년 / 월 70일

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법무심사	
법무	
계장	
취급	

정 안

서울특별시 인구 기 호

서울특별시 직업안전업무 적격요강중 개정요강

서울특별시 직업안전업무 적격요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업무 범위) 구정장 (출장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2종 직업안내소에 대한 기획감독과 영영정기 처분 및 그 종사자의 교육훈련
2. 직업안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0조 규정에 의한 허가 신청의 진달
3. 1,2종 직업안내 사업 허가 사항 변경
4. 부허가 직업소개 영외 단속

제6조 중 "(공공 직업안내소의 취업알선)"을 "(공공 및 1종 직업안내소의 취업알선)"으로 한다.

제7조 중 "(직업안내소의 취업알선)"을 "(2종 직업안내소의 취업알선)"으로 제7항 중 "직업안내소"를 "2종 직업안내소"로 하고 제8항 1호 중 "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한다.

제8조 중 "(구인구직전수)"를 "(공공 및 1종 직업안내소의 구인구직 전수)"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허가등의 관리) (1) 공공, 1,2종 직업안내소장은 구인포 및 구직포를 전국 표준 직업분류에 의거 직업별 (세분류)로 분류하고 취업을 알선한자, 구인 또는 구직을 취소한자, 신청후 60일 이내에 취업이 확정되지 않은 구인포와 구직포는 구분하여 관리한다.

(2) 동법 시행규칙 제79조에 관한 장부는 7년간 보관한다.

제 11조중 (안내소의 직업상담) 을 "(직업안내소의 직업상담)" 으로 한다.

제 15조중 제 1호, 제 3호 및 제 4호 항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 4호 예규 사, 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음 항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한다.

3. 다음 항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30일에 처한다.

4. 다음 항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10일에 처한다.

바. 법 제 26조에 위반하여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가. 동법 시행규칙 제 19조에 의한 장부등을 1년간 보관하지 않은 자

아. 권 항목의 경우 이의의 행정 명령을 위반한 자

제 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7조 (보고) (1) 구청장은 1,2종 직업안내소의 직종범 구인,구직 취업

현황과 지도 현황을 다음 분기 개시후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1,2종 직업안내소의 영업정지 처분과 허가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요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년 영	개 영
<p>제9조 (업무 범위) 구경강(출장소장을 포함한다 이아관)은 다음과 같을 수 있다.</p> <p>1. 공공직업안내소 및 1,2종 직업안내소에 대한 기획감독과 적분 및 그 종사자의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p> <p>2. 무허가 직업소개 행의 단속에 관한 사항</p>	<p>제9조 (업무 범위) 작동</p> <p>1. 1,2종 직업안내소에 대한 기획감독 과 영입금지 적분 및 그 종사자의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p> <p>2. 직업안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0조 규정 외의 허가 신청의 진달 (신청)</p> <p>3. 1,2종 직업안내사업 허가사항 변경 (신청)</p> <p>4. 무허가 직업소개 행의 단속</p>
<p>제6조 (공공직업안내소의 취업알선)</p>	<p>제6조 (공공 및 1종 직업안내소의 취업알선)</p>
<p>제7조 (직업안내소의 취업알선)</p>	<p>제7조 (2종 직업안내소의 취업알선)</p>
<p>(1) 직업안내소의 취업알선은</p> <p>(2) 2종 직업안내소장은 ...한다</p> <p>(3) 2종 안내소장은 ...한다</p> <p>1. 주민등록증 내용 기재(본적, 주소, 성명, 생년월일은 번호 발행처등)</p>	<p>(1) 2종 직업안내소의 취업알선은</p> <p>(2) 작 등</p> <p>(3) 작 등</p> <p>1. 주민등록증 내용 기재(본적, 주소,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발행처등)</p>
<p>제8조 (구인구직 접수)</p>	<p>제8조 (공공 및 1종 직업안내소의 구인 구직접수)</p>

제 9조 (구인포 및 구직포 관리) 구인포 및 구
 직포는 산공표준 직업분류에 의거 직종별
 (세분류)로 산공표준의 학력, 분류된 것은 이
 를 1년간 초과하여 취업할 수 없으며
 구직포는 구인을 취소한 자, 신청후 60일
 이내에 취업이 확정되지 않은 구직포와 구
 인포는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 11조 (안내소의 직업상당)
 제 15조 (행정처분 기준) 구청장은
 한다.

1. 취 소

가 - 자 (상당)

2. 생략

3. 영업정지 30일

가 - 바 (생략)

4. 영업정지 10일

가 - 나 (생략)

다. 법 제 26조에 위반하여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신설)

제 9조 (상누등의 관리) (1) 공공 1,2종
 직업안내소장은 구인포 및 구직포를 산
 공표준 직업분류에 의거 직종별(세분류)
 로 산공표준에 취업할 수 없으며, 구인포
 는 구직을 취소한 자, 신청후 60일 이내
 에 취업이 확정되지 않은 구인포와 구
 직포는 구별하여 관리한다.

(2) 동법 시행규칙 제 19조에 정한 장
 부는 1년간 보관 한다 (신설)

제 11조 (직업안내소의 직업상당)
 제 15조 (행정처분 기준) 직 등

1. 다음 항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취소를 취소 한다.

가 - 자 (생략)

2. 직 등

3. 다음 항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영업정지 30일에 처한다.

가 - 바 (직 등)

4. 다음 항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영업정지 10일에 처한다.

가 - 나 (직 등)

다. 법 제 26조에 위반하여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신설)

사. 동법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강부
등을 1년간 보관하지 않은자 (선집)
다. 전각종 경우 이외의 행정명령을 위반
한자

제17조 (보고) (1) 구청장은 공공 직업안내
소 및 1,2종 직업안내소의 직종별 구인구직
직업현황과 지도변황을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공공 직업안내 사업 및 1,2
종 직업안내사업을 승인 또는 허가하지
나 승인 및 허가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
하였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보고) (1) 구청장은 1,2종 직업
안내소의 - - - - -
- - - - - 다음 분기 개시후 10일
까지 - - - - -

(2) 구청장은 1,2종 직업안내소의
영업정지처분과 허가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 - - - -
- - - - -
- - - - -